

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(제38조제2항 관련)
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	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	수임 기관
산업통상부장관	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	국가기술표준원
	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0호나목, 같은 조 제11호나목, 같은 조 제12호나목, 같은 조 제13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생활용품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	국가기술표준원
	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	국가기술표준원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	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측정기기 와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	국립환경과학원
고용노동부장관	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	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「전파법」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	국립전파연구원

비고: 수임기관에 위임되는 권한은 위 표의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제38조제2항의 권한에 한정한다.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의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.